

#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관

|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
| 인가   | 1999. 6. 02 |
| 변경인가 | 2000. 4. 06 |
| 변경인가 | 2001. 3. 31 |
| 변경인가 | 2002. 5. 07 |
| 변경인가 | 2002. 6. 21 |
| 변경인가 | 2003. 4. 14 |
| 변경인가 | 2004. 4. 22 |
| 변경인가 | 2005. 5. 18 |
| 변경인가 | 2006. 3. 24 |
| 변경인가 | 2007. 4. 20 |
| 변경인가 | 2008. 4. 08 |
| 변경인가 | 2008.12. 04 |
| 변경인가 | 2009. 4. 03 |
| 변경인가 | 2010. 3. 08 |
| 변경인가 | 2010. 7. 30 |
| 변경인가 | 2010.11. 10 |
| 변경인가 | 2012. 1. 04 |
| 변경인가 | 2012. 4. 12 |
| 변경인가 | 2012. 9. 09 |
| 변경인가 | 2013. 4. 03 |
| 변경인가 | 2014. 4. 02 |
| 변경인가 | 2014.12. 04 |
| 변경인가 | 2015. 4. 20 |
| 변경인가 | 2015. 6. 16 |
| 변경인가 | 2017. 4. 5  |
| 변경인가 | 2018. 9. 12 |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6.16]

**제2조(설립근거 및 명칭)** ① 이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.

② 이 공사는 “주택도시보증공사”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라 하며, 영문으로는 “Korea Housing & Urban Guarantee Corporation(약호 HUG)”으로 표기한다.

[본조개정 2015. 6.16]

**제3조 (사무소)**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(이하 “본사”라 한다)를 부산광역시에 둔다.  
<개정 2015. 6.16>

② 공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4조(자본금)**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,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.

[본조신설 2015. 6.16]

**제5조 (광고방법)** 공사의 광고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khug.or.kr>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부산일보와 서울특별시에 발행되는 서울신문 및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.<개정 2004.4.22, 2012.1.4., 2012. 4.12., 2015. 6.16>

**제6조 (정관의 변경)** 공사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9.4.3., 2015. 6.16>

**제7조 (등기)**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6.16>

## 제 2 장 주 식

**제8조 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**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억 주로 한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9조 (1주의 금액)**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,000원으로 한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10조 (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** 공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억6천9백6십만2천8백주로 한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11조 (주식의 종류)**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

선주식으로 하고, 주식의 발행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12조 (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** ① 공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,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내로 한다.<개정 2015. 6.16>

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 연 1%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.

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.

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.

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.

⑥ 공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,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<개정 2015. 6.16>

⑦ 우선주식의 존립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고,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 이 경우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13조 (주권의 종류등)** ① 공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, 오주권, 일십주권, 오십주권, 일백주권, 오백주권, 일천주권,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.<개정 2015. 6.16>

② 공사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할 수 있다.<개정 2015. 6.16>

③ 공사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2. 6.21, 2015. 6.16>

**제14조 (신주인수권)** ① 공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<개정 2015. 6.16>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이사회 결의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

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,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 주주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<개정 2015. 6.16>

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**제15조 (신주의 배당기산일)** 공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16조 (명의개서대리인)** ① 공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<개정 2015. 6.16>

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

③ 공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.<개정 2015. 6.16>

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⑤ 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에 관한 제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각 주주로부터 이사회가 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17조 (주주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**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16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6.16>

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.

④ 주주, 등록질권자 등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나 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신설 2004.4.22><개정 2015. 6.16>

**제18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** ① 공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

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<개정 2015. 6.16>

② 공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사는 그 기간 또는 그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6.16>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이 정지되거나 기준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재변경이 정지된 기간의 전일 또는 기준일에 최종적으로 기재된 자를 당해 사항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본다.

### 제 3 장 사 채

**제19조 (전환사채의 발행)** ① 공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03. 4.14, 2015. 6.16>

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
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,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.

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20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** ① 공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03. 4.14, 2015. 6.16>

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
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,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.

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21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**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<개정 2015. 6.16>

## 제 4 장 주주총회

**제22조 (주주총회의 결의사항)**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이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한다.

**제23조 (소집시기 및 소집지)** ① 공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<개정 2015. 6.16>

②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3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③ 주주총회는 본사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24조 (소집권자)**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장이 소집한다.

②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15. 6.16>

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**제25조 (소집통지)**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의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하여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는

당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<개정 2003. 4.14, 2015. 6.16>

**제26조 (의장)**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으로 한다.

②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27조 (의장의 질서유지권)**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·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**제28조 (주주의 의결권)**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

**제29조 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)** 공사,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30조 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**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공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6.16>

② 공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31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**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대리인은 공사의 주주에 한하며,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의 주주는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<개정 2002. 6.21, 2015. 6.16>

**제32조 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** 주주총회의 결의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**제33조 (주주총회의 의사록)**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, 의장과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사에서 보존하고, 그 사본을 지사 또는 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6.16>

## 제 5 장 임원 · 이사회 · 감사위원회

**제34조 (임원)**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, 상임이사 4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4명 이상과 감사 1명을 둔다. <개정 2002.5.7., 2005.5.18., 2015. 6.16>

**제35조 (임원의 선임)**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.

[본조개정 2009.4.3]

**제36조 (임원추천위원회)** ① 공사에 임원(사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후보자의 추천 및 사장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12.1.4., 2015. 6.16>

1. 비상임이사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4인<개정 2015. 6.16>

2. 법조계, 경제계, 언론계,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 3인 (정관 제3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) 다만,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15. 6.16><단서개정 2015. 6.16>

② 추천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임원의 선임과 경영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임원의 선임과 경영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4.4.22, 본조개정 2007.4.20]

**제37조 (임원의 임기)**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02.5.7>

② 공사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임되는 임원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.<개정 2002.5.7., 2015. 6.16>

③ 임원의 결원으로 새로이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며,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.<개정 2015. 6.16>

[본조개정 2007.4.20]

**제38조 (임원의 결격사유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개정 2015. 6.16>

1.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<개정 2007.4.20>

2. 공사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손해를 끼친 자(회생 및 파산절차 등을 신청한 법인의 임원·경영실권자 등을 포함한다) <개정 2003. 4.14, 2007.4.20., 2015. 6.16>

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39조 (임원의 직무)**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15. 6.16>

②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·집행하며,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5. 6.16>

③이사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임이사 중에서 부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.<개정 2008.12.4>

**제40조 (임원의 보고의무)** 임원은 공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5.7., 2015. 6.16>

**제41조 (비상임이사의 성실의무)** 비상임이사는 회기일에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**제42조 (임원의 책임)** ① 임원이 관계법령 또는 이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공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<개정 2015. 6.16>

② 제1항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임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.<개정 2015. 6.16>

③ 제1항의 결의에 참가한 임원으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43조 (임원의 해임 등)** 공사 임원의 해임·해임건의·해임요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 의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.<개정 2007.4.20., 2015. 6.16>

[본조 신설 2005.5.18]

**제44조 (의원면직의 제한)** 임명권자는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
2.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,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

[본조 신설 2014.4.2]

**제45조 (이사회)** ①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 <단서신설 2002. 6.21> <단서 삭제 2005. 5.18><개정 2015. 6.16>

② 이사회는 공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<개정 2015. 6.16>

③ 이사회 의장은 제52조의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. 다만,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0.3.8., 2015. 6.16>

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,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. <개정 2010.3.8>

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여 그 회일의 3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2.5.7>

**제46조 (이사회내 위원회)**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에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며, 기타

필요한 경우에 이사회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의 구성·운영·권한·책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5.5.18]

**제47조 (감사위원회)**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비상임이사일 것
2. 위원 중 1인 이상은 「상법시행령」 제37조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<개정 2009.4.3., 2015. 6.16>
3. 위원회의 대표는 비상임이사일 것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상근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이 될 수 없으며, 상근감사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 다만, 공사의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임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2호에 불구하고 상근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.<단서개정 2015. 6.16>

1.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<개정 2015. 6.16>
2. 공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상임 임직원이었던 자<개정 2015. 6.16>
-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선임하며,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.
- ⑤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[본조개정 2008.12.04]

**제48조 (감사위원회의 직무)** ① 감사위원회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6.16>

- ② 감사위원회는 임원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공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<개정 2015. 6.16>
- ③ 감사위원회는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공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를 위하여 임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정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<개정 2015. 6.16>
-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

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[본조신설 2008.12.04]

**제49조 (이사회 결의방법)** ①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

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는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03. 4.14, 2015. 6.16>

③ 이사회가 심의·의결할 사항 및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. <신설 2003.4.14>

**제50조 (이사회 의사록)**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, 의장과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사에 비치한다. <개정 2002.5.7., 2015. 6.16>

**제51조 (상임이사회)** ① 이사회 내에 상임이사회를 두며, 상임이사회는 사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 <개정 2000.4.6., 2015. 6.16>

② 상임이사회는 이 공사업무의 중요사항중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결의한다. <개정 2000.4.6., 2015. 6.16>

③ 상임이사회는 결의된 사항을 비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00.4.6>

④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각 비상임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결의한다. <신설 2000.4.6>

⑤ 제45조제3항 내지 제5항, 제49조 및 제50조는 상임이사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00.4.6., 2015. 6.16>

**제52조 (선임비상임이사)** 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.<개정 2015. 6.16>

②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전과 그 밖에 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를 소집·주재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6.16>

[본조신설 2007.4.20]

**제53조 (위원회등)** ① 공사는 주택도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운용·관리, 보증심사, 보증이행 등 주요사안을 독립적으로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<개정 2015. 6.16>

② 공사는 정관 및 제규정등을 제·개정하기 전에 의견수렴 및 검토를 위하여 정부·주택건설사업자 및 공사 등의 실무대표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6.16>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54조(임원의 보수)** ① 임원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한다.<개정 2002.5.7., 2007.4.20., 2015. 6.16>

② 임원의 보수기준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.<신설 2008.4.8>  
<개정 2015. 6.16>

③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<개정 2002.5.7., 2015. 6.16>

[본조개정 2008.4.8]

**제55조 (고문 및 자문위원)** 공사는 이사회 결의로 2인이내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56조 (집행임원)** ① 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.<개정 2015. 6.16>

② 집행임원의 임면, 임기, 보수, 업무분장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8.12.04.]

**제57조(대리인의 선임)** 사장은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. 6.16]

## 제 6 장 업 무

**제58조 (업무)**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

한다.<개정 2015. 6.16>

1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<신설 2015. 6.16>
2. 「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증<신설 2015. 6.16> <개정 2017. 4. 5>
3. <개정 2015. 6.16> <삭제 2017. 4. 5>
  - 가. <삭제 2017. 4. 5>
  - 나. <삭제 2017. 4. 5>
  - 다. <신설 2005.5.18><삭제 2017. 4. 5>
  - 라. <신설 2008.4.8.><삭제 2017. 4. 5>
  - 마. <신설 2015. 6.16><삭제 2017. 4. 5>
  - 바. <신설 2015. 6.16><삭제 2017. 4. 5>
  - 사. <신설 2008.12.4><삭제 2017. 4. 5>
  - 아. <신설 2008.12.4><삭제 2017. 4. 5>
  - 자. <신설 2010.7.30><삭제 2017. 4. 5>
  - 차. <신설 2012.1.4.><개정 2015. 6.16><삭제 2017. 4. 5>
  - 카. <신설 2012.4.12><삭제 2017. 4. 5>
  - 타. <신설 2012.9.9><삭제 2017. 4. 5>
  - 파. <신설 2013.4.3.> <삭제 2017. 4. 5>
  - 하. <신설 2013.4.3><삭제 2017. 4. 5>
  - 거. <신설 2013.4.3><삭제 2017. 4. 5>
  - 너. <신설 2013.4.3><삭제 2017. 4. 5>
  - 더. <신설 2013.4.3><삭제 2017. 4. 5>
  - 러. <신설 2013.4.3.><삭제 2017. 4. 5>
  - 머. <신설 2015. 6.16><삭제 2017. 4. 5>
  - 버. <신설 2015. 6.16><삭제 2017. 4. 5>
  - 서. <신설 2015. 4.20><삭제 2017. 4. 5>
4.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보증<신설 2003.4.14.><개정 2015. 6.16>
5.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<개정 2015. 6.16>
6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(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에 대한 보증업무로서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보증
  - 가.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

나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공여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

[본호신설 2015. 6.16]

7. 제6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<신설 2015. 6.16>

8. 부동산의 취득·관리·개량 및 처분의 수탁<신설 2015. 6.16>

9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

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<신설 2015. 6.16>

11. 공사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,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함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

가.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

나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업무

[본호신설 2015. 6.16]

12.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련되는 해외사업<신설 2015. 6.16>

13.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정책으로 공사에 부여된 업무<신설 2007.4.20.><개정 2015. 6.16>

14. 기타

가.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융자(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대출한 융자금의 기한연장에 한한다)

나. 주택사업공제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이 행한 보증의 기한연장(대출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대환을 포함한다) 및 보증이행

다. 조합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토지의 개발을 위한 주택의 건설·공급·임대에 관한 사업

라. 공사의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등 운영·관리<개정 2015. 6.16>

마. 제1호 내지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<신설 2003.4.14.><개정 2006.3.24., 2008.12. 4, 2015. 6.16>

② 공사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(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)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5. 6.16>

- ③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.<신설 2015. 6.16>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02. 6.21, 2015. 6.16>

**제59조 (보증의 한도)** ①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로 한다. 다만, 금융기관·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보증의 총액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0.4.6, 2001.3.31, 2002.6.21., 2012.4.12., 2015. 6.16><단서신설 2015. 6.16>

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의 총액한도를 정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한 경우에는 증자를 마친 때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. <신설 2001.3.31> <개정 2009.4.3., 2015. 6.><단서개정 2015. 6.16>

③ 보증종류별 및 피보증인별 보증한도는 제1항의 총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**제60조 (신용조사 및 보증심사)** 공사는 제58조제1항에 의한 보증을 하는 경우에 보증신청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61조 (보증료등)** ① 공사는 공사업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료 및 융자금이자 등의 이용대가를 징수한다.<개정 2015. 6.16>

② 공사는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.<신설 2015. 6.16>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율, 융자금이자율, 징수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율 및 융자금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9.4.3., 2015. 6.16>

**제62조 (업무의 위탁)** ①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5. 6.16>

② 공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

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기금에서 부담한다.<신설 2015. 6.16>

**제63조 (규정의 제정)** 공사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중 이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<개정 2015. 6.16>

## 제 7 장 회 계

**제64조 (사업년도)**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<개정 2015. 6.16>

**제65조 (예·결산 보고 등)** ① 공사는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공사는 공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반영한 결산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사의 경영건전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9.12]

**제66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** ① 공사의 사장은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5.7., 2015. 6.16>

1. 재무상태표 <개정 2012.1.4>

2. 포괄손익계산서 <개정 2012.1.4>

3. 주식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)<개정 2012.9.9>

4. 자본변동표<신설 2008.4.8>

5. 현금흐름표

6. 연결재무제표

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간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5.7>

③ 사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제1항제6호의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6.16>

④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

게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사 또는 출장소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6.16>

⑤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.4.>

[기존 제65조에서 이기 2018. 9.12]

**제67조 (이익금의 처리)** ①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. <개정 2012.9.9., 2015. 6.16>

1. 이월손실금의 보전<개정 2015. 6.16>
2.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
3.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
4. 이익의 배당
5. <삭제 2015. 6.16>
6. <삭제 2015. 6.16>

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적립금은 결손 보전에 충당하거나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.<신설 2012.9.9.>

[기존 제66조에서 이기 2018. 9.12]

**제68조 (자금의 운용)**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.<개정 2015. 6.16>

1. 국제, 공채 및 그 밖에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증권 매입 <개정 2017. 4. 5>
2. <삭제 2017. 4. 5>
3. 금융기관에의 예치
4. <개정 2008.4.8., 2009.4.3., 2015. 6.16> <삭제 2017. 4. 5>
5. <삭제 2017. 4. 5>

[기존 제67조에서 이기 2018. 9.12]

**제69조 (이익배당)** ① 이익의 배당은 이사회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,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.

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 공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<개정 2015. 6.16>

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며 이익배당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4.4.22.>

[기존 제68조에서 이기 2018. 9.12]

**제70조 (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)**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공사에 귀속한다.<개정 2015. 6.16>

[기존 제69조에서 이기 2018. 9.12]

**제71조 (경영공시)** ① 공사는 결산서, 연도별 경영목표 및 예산등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6.16>

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, 이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6.16>

[기존 제70조에서 이기 2018. 9.12]

**제72조 (책임준비금의 적립)** 공사는 매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별로 「보험업법」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6.16>

[기존 제71조에서 이기 2018. 9.12]

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정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이 회사로 전환하여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(재산과 권리·의무의 승계)** ① 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는 회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.

② 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, 관계법령 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한 사항은 그 결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.

**제3조 (규정에 관한 경과조치)** ① 이 회사의 설립일 현재 시행중인 조합의 규정은 이를 회사의 규정으로 본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규정중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저촉되는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

③사장은 이 회사의 설립후 1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규정을 정비·보완하여야 한다.

**제4조 (임원에 관한 경과조치)** ①이 회사의 설립당시 조합의 이사장, 이사(전무이사를 포함한다) 및 감사는 각각 회사의 사장, 상임이사 및 감사로 본다.

②이 회사의 설립이후 최초로 선임하는 비상임이사중 제34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비상임이사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출자금 납입일 현재 출자금액이 많은 상위 2개 금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.

**제5조 (보증한도에 관한 경과조치)**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이 행한 보증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.

**제6조 (최초 주주총회의 주주명부폐쇄기준일)** 이 회사의 설립후 최초의 주주총회시에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는 이 정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로 한다.

**제7조 (사업년도)** ①회사는 조합의 사업을 승계하여 그에 연속하여 사업을 영위한다.

②회사의 제7기 사업년도는 1999년도중 조합으로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.

#### 부 칙 <2000. 4. 6>

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 <2001. 3. 31>

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 <2002. 5. 7>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(이사,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** ①제33조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.

②제34조 제2항 및 제3항, 제35조 제2항 및 제3항, 제38조, 제41조 내지 제43조, 제44조 제5항, 제44조의 2, 제46조, 제49조 제1항 및 제2항,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(주택법)이 개정되어 감사위원회제도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

③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는 주택건설촉진법(주택법)이 개정되어 감사위원회제도가 시행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되며, 임기만료시까지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임원으로 본다.

부 칙<2002. 6. 21>

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3. 4. 14>

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4. 4. 22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제13조의 2, 제34조제1항, 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3의 규정은 주택법 제80조,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4조·제11조 내지 제13조·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이 공포된 날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05. 5. 18>

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6. 3. 24>

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7. 4. 20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존임원에 대한 적용) ①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
②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시행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선임당시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<2008. 4. 8>

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<2008.12. 4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감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** 제4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당시 상근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**제3조(기존 집행이사에 대한 경과조치)** 이 정관 시행당시 회사 “집행이사운영규정”에 의하여 임명된 집행이사는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집행임원으로 본다.

**부 칙<2009. 4. 3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기존 임원에 대한 적용)**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
**부 칙<2010. 3. 8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<2010. 7. 30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<2010.11. 0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이사의 책임에 관한 적용특례)** 제40조(이사의 책임)는 제51조(사업) 제1항 제4의3호에 해당하는 업무 중 주택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회사가 회사채유동화증권 등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**부 칙<2012. 1. 5>**

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<2012. 4. 12>**

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<2012. 9. 9>**

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<2013. 4. 3>**

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<2014. 4. 2>**

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<2014.12. 4>**

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<2015. 4.20>**

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<2015. 6.16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,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(이하 “대한주택보증”이라 한다) 및 그 임직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 및 그 임직원으로 본다.

②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한주택보증 명의로 행한 행위,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 정관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의 대한주택보증 명의를 이를 공사의 명의로 본다.

④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한주택보증의 규정은 이를 공사의 규정으로 본다.

⑤ 이 정관 제34조(임원)에도 불구하고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, 이 정관 제47조 등의 감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**부 칙<2017. 4. 5>**

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<2018. 9.12>**

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